

NEP·NET 인증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감사

2016. 12.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1. 감사 개요

- (감사배경) 민간협회에 위탁된 NEP·NET 인증업무와 관련, 부당인증 및 인증업무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인증제도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 (예비감사 및 1차 실지감사) '16.4.25~6.10, (2차 실지감사) '16.7.25~9.3

- (대상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및 인증업무 수탁기관 2곳*

* (NEP) 한국신제품인증협회 부설 신제품인증센터, (NET) 한국기술진흥협회

- (감사반) 산업부 감사담당관실 직원 3명

- (감사중점) 최근 3년간('13~'15) 인증제도 운영실태 전반

-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
- 수탁기관 : 관련 법령·규정의 준수, 인증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여부 등

2. NEP·NET 인증제도 현황

- (NEP 인증) 신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판매 초기 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을 통해 NEP 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 '06.10월부터 공공기관이 NEP 제품 의무구매제도 실시(해당품목의 20%)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한국신제품인증협회 부설 신제품인증 센터에 NEP 인증업무*를 민간위탁('15.2)**

* '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고시)'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MOU 체결

** '13~'15년간 561건의 신청에 143건 인증부여(민간위탁 인증 : 224건 신청에 61건 인증)

- (NET 인증)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인증제도* 운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 일반기술·보건·건설·환경 등 8개 부처 총 10개 분야에 대한 NET 인증제도 운영 중

- '01.7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NET 인증에 관한 사무를 법정위탁 받아 인증업무 수행 중('01.7. 과기부→'08.12. 산업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8조)

* '13~'15년간 1,282건의 인증신청에 대해 286건의 NET 인증을 부여

3. 감사결과 처분현황

(단위 : 명, 건)

신분상 조치(명)		행정상 조치(건)						합 계
문 책	주의·경고	수사의뢰 요 구	시정요구	기 관 주의·경고	통 보	권 고	개선요구	
3	20	1	2	2	10	5	9	52

4. 주요 감사결과

□ (법령근거 없는 민간위탁 추진) 국표원은 NEP 인증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내부지침에 불과한 ‘운영요령’을 근거로 민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 NEP 인증 운영요령 제37조(업무대행) 제5호의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국표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근거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근거가 취약

○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산촉법 시행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야 하나, 이를 미준수하고 부적정하게 업무수행**

* NET 인증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57조 제5항)에 법정위탁 근거를 두고 있음

** 감사원 감사(국가사무 민간위탁 운영실태)에서도 법적근거 없는 민간위탁을 부당위탁으로 지적(‘15.6)

* (민간위탁 배경) ‘13.12.12 국표원의 직제개편(기술규제대응국 신설)으로 인한 인증담당 부서 폐지 및 인증담당 인력축소(10명→3명)로 인한 평가인력 부족과 지방이전(‘14.5)에 따른 인증업무의 비효율성(비용·시간 과다) 해소를 위해 ‘15.2월 민간위탁 추진

□ (법령정비 계획 미이행) NEP 인증사무 민간위탁시 법령근거 마련을 동시 추진한다는 국표원장의 방침*을 미준수하고 산촉법 시행령 개정을 미이행

* ‘NEP 등 4개 인증제도 개선방안’(14.12월, 국표원장 결재)

□ (수탁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15.2월 NEP 인증사무 수탁기관 선정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국신제품인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 수탁기관 선정시 공모절차 거처도록 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반

□ (수탁기관 관리·감독 부실) 점검기간 및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인증현황 파악 및 사업비 집행 등 인증관련 단순사무 중심으로 형식적 점검만 실시

☞ NEP 인증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해 기관경고 하고, 업무관련자는 주의·경고조치(기관경고 1건, 주의 3명, 경고 2명)

* 민간위탁 부적정 : 주의 3명, 법령정비 미이행 및 수탁기관 관리·감독 부적정 : 경고 2명

☞ NEP 인증사무 위탁 법적근거 마련 및 위탁방식 개선(부적절한 민간위탁 회수·공공기관 위탁 추진 또는 직접수행 등),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전면적인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개선요구 2건, 권고 1건)

*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행정사무 민간위탁 개선방안(‘16.5)」 등을 참고하여 마련

□ (부정인증) ‘15.3월 ○○○○○○(주)가 인증 취득한 신제품은 법정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정인증 사례로 확인

* 인증기준(산촉법 제19조) : ① 신기술 보유 ② 제품 우수성 입증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④ 상용화 실적 보유

○ 특히, 특허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하여 산촉법 제16조의5의 당연 직권 취소 사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증취득)에 해당

* ○○○○○○(주)의 부정인증 사유 : 신기술성 증명자료(특허관련 자료) 허위제출(타인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우수성 입증 실패(인증 신청제품과 다른 형태의 제품비교), 상용화실적 오진 결여(인증 신청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인증을 취소토록 통보(시정요구 1건)

☞ 산촉법 제47조(벌칙)에 따라 수사의뢰토록 통보(수사의뢰 요구 1건)

☞ 부정인증 업무담당자와 감사 거부자에 대해 문책토록 조치(문책 3명)

☞ 부정 인증평가 참여위원은 심사참여를 제한(자격박탈)토록 통보(통보 1)

□ (인증절차 위반 부당인증) ■■■■■(주) 등 3건의 인증 신청제품은 운영요령 상의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심사한 후 인증부여

* NEP 인증 운영요령 제12조(이의신청 절차) : 인증평가위원회 → 인증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14일 이내)

기 관 명	인증평가위원회	이의신청	인증심의위원회
■■■■■(주)	‘15.03.04	‘15.03.12	‘15.03.20
(주)△△△△	‘15.03.04	‘15.03.14	‘15.03.20
(주)◆◆◆◆	‘15.01.28	‘15.02.05	‘15.02.12

- ☞ 인증절차를 위반한 부당 업무처리자에 대해 경고조치(경고 3명)
- ☞ 연장·추가연장 심사시 인증존속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고, 부당 인증평가 참여위원은 심사참여를 제한(자격박탈)토록 통보(통보 1건)
- ☞ 재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시 반드시 최초 인증평가위원회 참석했던 위원 일부가 재평가위원회에 참여토록 제도개선 조치(개선요구 1건)

- (신청서류 부실 검토에 의한 부당인증) 실용화자료(상용화실적), 공인시험 성적서 등 인증 신청서류 부실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인증부여
- * NEP 인증 운용요령 제3조 : 신청서류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기간을 명시 보완요청하고, 기간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

기 관 명	부실 신청서류 검토내용
(주)AAAAA	제품 실적증명서에 인증신청일 이후 납품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유효한 상용화 실적으로 인정
(주)BBBBB	유효기간이 종료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주)CCCCC	4개 시험평가항목 중, 1개 시험항목만 공인시험성적서가 있고 3개 시험평가항목은 자체시험 성적임에도 인증부여
(주)DDDDD	인증평가위원회의 공인시험기관 성능시험 필요 의견을 무시하고 시험기간(2월) 및 비용(천만원)의 과다소요를 이유로 자체 성능평가시험을 인정
(주)EEEEEE	주요 시험평가항목을 누락하여 시험하고, 일부 시험항목이 부적합한 공인시험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증부여
FFFFF(주)	일부 시험항목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하였음에도 인증부여

- ☞ 인증신청서류 부실검토로 인한 부당 업무처리자에 대해 경고조치(경고 6명)
- ☞ 부실서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관련규정 미충족시 인증을 취소하거나, 연장심사시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인증존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부당 인증평가 참여위원은 심사참여를 제한(자격박탈)토록 통보(통보 6건)
- ☞ 인증신청기업의 불편 및 인증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인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개선요구 1건)

- (인증위원회 부실 운영)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인증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필요
 - (위원자격 검증시스템 부재) 위원 자격검증을 위원 단순이력(재직·전공 등)만을 유선확인으로 대체하여 심사위원의 신뢰성·전문성 확보에 문제
 - * NET의 경우 이력서 징구,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 연계 학위·논문실적·연구분야 등 검증
 - (인증심사위원 DB정비 필요) 인증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저해요인이었던 동종 경쟁사 기술책임자와 개발제품사용자를 심사위원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심사위원 DB정비 필요(심사위원 배제대상자를 위원 DB에서 삭제)
 - (인증심사위원 위촉절차 투명성·보안성 취약) NEP 인증 수탁기관(신제품인증센터)의 독립성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심사위원 위촉·선정 권한을 부여
 - 위원선정에 외압이 작용하거나, 신청기업의 청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
 - 선정 위원명단을 위탁기관인 국표원에 이메일로 통보하는 등 보안성 취약

- ☞ 위원자격 검증시스템 구축·운영, 심사위원 배제대상자를 위원 DB에서 삭제, 위원 위촉절차의 투명성·보안성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통보(개선요구 1건)

- (인증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인증위원회 위원 전문성 확보에 대한 정밀검증 없이 심사위원 위촉
 - 이로 인해, 4년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2년제 대학교수 등 자격미달 위원 11명을 위촉, 최근 3년간 총 361건의 인증심사에 참여
 - * 신제품인증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6조(위원자격)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 ☞ 자격미달 위원을 인증심사위원에서 해촉토록 통보(통보 1건)
- ☞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인증위원회 구성·운영의 적법·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요구(개선요구 1건)

- (특정위원의 인증심사 편중) 인증위원회 참석이 용이한 특정인 중심으로 인증위원회를 운영하여 일부 위원에게 인증심사가 편중되는 현상 발생

- * 1년에 10건 이상 인증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39명에 달함
- * 최근 3년간, 심사위원 Pool 활용율이 38.3%에 불과(총 2,415명 중 926명 활용)
- 심사위원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인증 신청기업의 로비대상이 될 가능성 농후

☞ 위원별 인증심사 참여현황을 DB화하는 등 특정위원의 인증심사 편중 방지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인증위원회 위원 Pool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개선요구 1건)

- (인증심사기간 지연 부적정) 법정사유* 외에 부당 인증심사 지연 건수가 최근 3년간 총 3건 발생, 각종 지원제도 활용지연으로 기업애로 초래
- * 법정 사유 : 신청제품 시험소요기간, 신청서류 보완 요청기간, 소명자료 제출기간
 - * 최근 3년간 지연건수(총 61건) : (법정지연) 58건, (부당지연) 3건('13년 2건, '15년 1건)

☞ 부당지연 사례 재발방지 권고 및 업무담당자 경고조치(경고 3명)

- (사후관리 부적정)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인증업체가 최근 3년간 총 31개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적정 행정조치를 미시행
- * 최근 3년간 실적보고서 미제출 현황 : ('13) 8개사, ('14) 6개사, ('15) 17개사
 - * 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유 : (부도의심) 9개사, (의도적 미제출) 22개사

☞ 사후관리 실시 후, 인증취소 등 적정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시정요구 1건)

☞ 실적보고서 접수 조사분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권고 1건)

- (인증유효기간 연장평가 부적정)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함에도 신청기간을 초과한 인증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인증심사
- * 최근 3년간 총 9건의 연장신청기간 초과 건을 심사, 이 중 3건에 대해 인증부여

☞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기관주의 1건)

☞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법정기한 위반 제재규정이나 법정기한 준수 예외규정 등을 마련하여 민원발생 및 업무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토록 요구(개선요구 1건)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한국신제품인증협회와 신제품인증센터간 구분회계 미준수(사업비 교차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3.5억원)

- * 사업예산('15년 10억원) 관리 부적정 내역(부당이체 내역)
- (사업비 계좌→운영비 계좌) 348백만원, (센터→협회) 6백만원, (협회→센터) 2백만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고, 부적정 업무처리자는 주의조치(통보 1건, 주의 1명)

- (이의신청 절차 규정미비) 산촉법상*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하위 규정(운영요령)에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인증신청자의 구제수단이 봉쇄

- * 산촉법 시행령 제20조 : 신기술 인증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사례) (주)▲▲▲가 1차 서류심사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이의신청하였으나 하위 규정에 이의신청 절차 없음을 이유로 종결처리

☞ 수탁기관에 이의신청 절차규정 마련을 위탁기관에 건의하도록 권고하고, 위탁기관에는 조속히 하위규정에 이의신청 세부절차를 마련토록 통보(권고 1건, 개선요구 1건)

- (인증심사위원 선정시스템 취약) NET 인증 운영요령 상 산업기술분류(대·중·소)와 시스템상 심사위원 전문분야(대·중) 불일치로 인해 NET 인증신청 기술별 적정 인증심사위원 선정이 곤란

- * '06년 이후 시스템상의 기술핵심단어(Key Word) 현행화 소홀로 산업기술분류표상의 기술분류와 심사위원 DB 상 보유기술 분류가 달라 매칭이 사실상 불가능

☞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의 개정('16.6.27)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핵심기술단어 현행화를 실시하는 등 인증평가 심사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재구축하도록 조치(통보 1건)

- (인증 신청서류 보관·관리 부실) '13년도 NET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 신청서류 일체를 임의 폐기(총 376건의 신청서류 중 273건 폐기)

- 이는 '심사결과 근거자료의 명문화 원칙'에 위배되고 인증탈락 기술의 재신청시 자료활용을 제한(인증평가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검증 불가능 초래)

* 정부 위탁업무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관·관리

☞ 인증서류 보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문서관리규정을 개정토록 권고
하고, 인증서류를 임의폐기한 업무관련자는 경고 조치(권고 1건, 경고 2명)

□ (청렴서약서 통합징구 부적정) NET 인증심사위원의 청렴서약서를
교통비 지급확인서와 통합 징구하면서 교통비 지급확인서에만 서명 요구

* 인증심사위원의 책임성(비밀유지·청탁금지 등) 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의 별도 징구조치 필요

☞ 인증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인증심사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서약서를 별도 징구토록 조치(권고 1건)

